

'17년 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'18년 필요인원 신청관련 자체 평가 기준

**보건복지부
보건산업정책국**

□ 우리부 자체 평가기준

○ 기본 원칙

-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, 유망중소기업*,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, 산학연계 활성화 기업, 강소기업에 우선 선정 또는 높은 배점 부여

* 나노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체, 벤처기업 등

- 기업체별 1개 공장

○ 세부 평가기준

평 가 기 준	배점	제 출 서 류
1)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- 최근 3년 중 1개년도의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10%(화장품은 5%)이상인 기업 ※수출비중이 20%(화장품은 10%)이상인 경우 별도 가점 차등 부여 ① 의약품 및 의료기기 · 수출비중이 20%이상~30%미만인 경우 · 수출비중이 30%이상인 경우 ② 화장품 · 수출비중이 10%이상~15%미만인 경우 · 수출비중이 15%이상인 경우 -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10%(식품 및 화장품은 5%)미만인 경우 : 최근 3년간 수출액이 매년 상승하거나 국내·외 수출관련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	20 5 5	- 수출비중 계산서 ([양식기 참조]) - 수출비중 계산서 또는 박람회 등 참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
2) 유망중소기업(해당항목 누계 적용) - 첨단과학기술(Biotechnology, Nanotechnology)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체 - 기업경영이나 기술이 양호하여 금융지원을 실시할 경우 성장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발굴기관(중소기업청, 중소기업진흥공단, 금융기관, 시·도, 출연연구기관)에서 선정한 중소기업 - 최근 3년간 매출액이 매년 상승한 중소기업 -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	10 10 10 10	- 관련단체장 확인자료 - 유망중소기업선정서 또는 이노비즈기업확인서 사본 -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사본 -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
3) 법인 상시종업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소기업	10	- '12년 5월분 법인전체 임금대장(국민연금납부증명서 · 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로 대체 가능)사본

평 가 기 준	배점	제 출 서 류
4) 기술지도 우수기업(각호의 1 해당) 가. 최근 2개년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2%이상인 기업 나. 정부 및 출연기관의 첨단기술(제품)개발사업 수행기업 다. 신물질 등 특허출원기업 또는 신기술인증기업(NT, KT, EM마크표시업체), 기타 실용신안 특허등록 기업 라. 최근 3년 이내 산업기술인협회장, 언론기관장, 중앙행정기관 이상의 장으로부터 신기술, 신제품 등으로 수상경력이 있는 업체 마. 부설연구소 등록업체 ※ 최근 2개년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3%이상인 경우 별도 가점 차등 부여 - 3%이상~ 5% 미만인 경우 - 5%이상(바이오 분야의 경우 3%이상)인 경우	10 5 추가 10추가	-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계산서 ([양식8] 참조) - 용역계약서사본 - 특허출원(등록) 사본 또는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- 표창장 및 상장 사본 - 부설연구소등록증 사본 -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계산서 ([양식8] 참조)
5) 지방소재기업(수도권 제외) - 지정신청사업장이 수도권지역 이외에 있는 경우 ※ 군 소재기업은 별도 가점 부여	5 5 추가	- 공장등록증 사본
6) 품질관리 우수기업 가. 의약품의 경우 KGMP, BGMP 인증업체 나. 식품·의료기기의 경우 KS표시허가업체, ISO9000 이상 인증업체, HACCP인증업체 다. 화장품의 경우 CGMP인증업체 또는 ISO9000 이상 인증업체 라. GH인증업체, HT인증업체 ※ 의약품의 경우 2008년 GMP관리실태 평가결과 E등급 업체는 점수 인정하지 않고, 감점 부여	5 5추가 10감점	- 인증서 사본
7) 기업·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기업	10	- 프로그램 참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
8) 강소기업 -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권익보호, 안정적 인력 지원,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를 유도하는 우수기업	10추가	- 워크넷 “강소기업” 등재 사실
9) 산학연계 협약업체 가. 산학연계 특성화고 3자 협약업체 나. 산학연계 마이스터고 협약업체 다. 산학연계 중소기업 기술사관 협약업체 라. 산학연계 특성화고 2자 협약업체	가~다. 우선 선정 20추가	- 취업협약서([양식9] 참조)
10) 기타사항(각호의 1 해당) 가. 동원업체로 지정된 기업 나. 여성대표자가 경영하는 중소기업 다. 수출지원대상지정업체, 수출유망중소기업, 수출	5	- 지정서 사본 -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- 선정서 등 내용확인서류 사본

평 가 기 준	배점	제 출 서 류
기업화대상업체 또는 세계일류상품생산인증기업 라. 산업단지(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, 수출자유 지역 등)입주기업, 외국인전용단지 입주기업 마.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기업	5 추가	- 공장등록증 사본 - 채용시 자격소지자 가점규정 또는 자격수당 지급규정

※ 별도 가점은 추천기준별 배점과는 별도로 부여

※ 동일점수 경합시 평가기준 중 상위 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 우선. 세부점수 내역도
동일한 경우 지정업체 종업원 수 적은 업체 및 매출액이 높은 업체 우선

○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

① 각종 인증서는 '13.7.1. 현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제출
하고,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인증서의 경우 인증일로부터의
유효기간을 유망중소기업선정서 5년, 이노비즈기업확인서 3년, 벤
처기업 확인서 2년,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2년 인정

② 평가기준 2) 관련

- 첨단과학기술(Biotechnology, Nanotechnology)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체
증빙서류

· 업체 나름대로 첨단바이오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
제출. 관련단체장이 확인한 자료이어야 함

예) BT·NT 관련 특허, 연구투자내역서 또는 연구실적 등

- 유망중소기업 관련 : 우수제품, Family 기업인증, 회원인증은 인정
하지 않음

③ 평가기준 4) 관련

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0점 인정하므로 서류
간소화를 위해 해당사항 한 가지에 대해서만 증빙서류 제출 요망

- 신물질 등 특허출원기업 또는 신기술인증기업(NT, KT, EM마크 표
시업체), 기타 실용신안 특허등록 기업 인정 관련

- 의장등록증, 상품등록증은 신기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않음. 신물질, 신기술로 인한 특허, 실용신안 등만 인정

④ 평가기준 5) 관련

- 수도권지역 범위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과밀억제지역)

제3조 (과밀억제지역) 법 제2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.

1. 서울특별시
2. 인천광역시[강화군, 옹진군, 서구 대곡동·불로동·마전동·금곡동·오류동·왕길동·당하동·원당동,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]
3. 경기도 의정부시, 구리시, 남양주시(호평동·평내동·금곡동·일패동·이패동·삼패동·가운동·수석동·지금동·도농동에 한한다),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(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)

⑤ 평가기준 10) 관련

- 각 호(가~라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점 인정하므로 서류 간소화를 위해 해당사항 한 가지에 대해서만 증빙서류 제출 요망

[양식6]

병역지정업체 평가서

(○○○협회)

1. 기업명 및 전화번호

기 업 명	전 화 번 호	업 체 구 분(○표시)	
	() -	신규	기지정

2. 평가내용

세부 평가 기준(신규 및 기지정)	점 수	해 당 항 목
1)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※ 별도 가점 부여 가능		
2) 유망중소기업		
3) 법인 상시종업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소기업		
4) 기술지도 우수기업 ※ 별도 가점 부여 가능		
5) 지방소재기업(수도권 제외) ※ 별도 가점 부여 가능		
6) 품질관리 우수기업		
7) 기업·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기업		
8) 강소기업		
9) 산학연계 협약업체		
10) 기타사항		
점 수 합 계		

[양식7]

(1면)

수출비중 계산서

(업 체 명)

	매출액(A)	수출액(B)	수출비중(B/A)
2014년	백만원	백만원	%
2015년	백만원	백만원	%
2016년	백만원	백만원	%

우리 업체의 수출비중 계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15 년 6 월 일

업 체 장

(인)

※ 기재방법

1. 점수 인정받을 수 있는 년도의 매출액, 수출액 및 수출비중을 기재
2. 수출비중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

※ 첨부서류

1. 매출액 증빙서류 : 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
2. 수출액 증빙서류 : 무역협회 · 주거래은행 등이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빙서류 또는 한국관세무역연구원이 발행하는 '자사수출입실적증명' 등

<참고사항>

- 가급적 월별 총액 및 연간 총액이 원단위로 기재된 “수출실적명세서” 제출
- 수출매출액이 기재된 손익계산서로 증빙하는 경우, 그 내용을 표시
- 수출신고필증, 외화획득용원료(물품)구매승인(신청)서,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(발급)신청서는 가급적 제출을 삼가하고, 동 서류를 제출하여 증빙하는 경우에는 2면의 수출액 총람표 작성
- 부가가치세신고서 불인정

(2면)

수출신고필증, 외화획득용원료(물품)구매승인(신청)서,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(발급)신청서로 수출액을 증빙할 경우에 아래의 수출액 총람표를 작성합니다.

수출액 총람표					
2014년		2015년		2016년	
일자	수출액(원)	일자	수출액(원)	일자	수출액(원)
2014. . .		2015. . .		2016. . .	
총액		총액		총액	

연구개발비 투자비율 계산서

	매출액(A)	연구개발비(B)	연구개발비 투자비율(B/A)
2015년	백만원	백만원	%
2016년	백만원	백만원	%

우리 업체의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계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17 년 6 월 일

업 체 장 (인)

※ 기재방법 :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

※ 첨부서류

1. 매출액 증빙서류 : 손익계산서 사본
2. 연구개발비 증빙서류 : 세무사·공인회계사 확인의 “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 명세서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)”